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12호(그2)
2022. 9. 8.(목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2-2581호	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	입법예고	2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581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8일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'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)

-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체육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내용

- (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팩스 · 이메일 · 등기우편

- (1) FAX : 02-2133-1064
- (2) E-mail : shg1214@seoul.go.kr
- (3) 우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, 한국프레스센터 5층
- (4) 온라인 :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

다. 문 의 :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☎02-2133-2679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